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53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김현정 · 박지원 · 이용선
남인순 · 박정현 · 김문수
김남근 · 박홍배 · 이수진
양부남 · 황명선 · 이광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수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등을 하였을 것
2. 신고자가 조사·감사·수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 ----- ----- ----- ----- <u>. 다만, 신고자가 해당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 밖에 감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u>
<u><신설></u>	1. <u>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등을 하였을 것</u>
<u><신설></u>	2. <u>신고자가 조사·감사·수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